

Declaration of Origin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Unique reference number:

1. Exporter's name, address, country, and contact	2. Authorization code
3. Producer's name, address, country, and contact(if known)	4. Importer's or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and contact

5. Item number	6. Number and kind of packages; and description of goods.	7. HS Code of the goods (6 digit-level)	8. Origin Conferring Criterion	9. RCEP Country of Origin	10. Quantity (Gross weight or other measurement), and value (FOB) where RVC is applied	11. Invoice number(s) and date of invoice(s)

12. Remarks

13. Declaration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and that the goods covered in this Declaration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These goods are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Date of Declaration: _____ Name of Signatory: _____ Signature: _____

14. Back-to-back Declaration of Origin Third-party invoicing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18조 및 부속서 3-나에 따라 인증수출자가 작성할 수 있는 원산지신고서의 권고 서식이며,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이 서식의 작성방법은 인쇄될 필요가 없습니다.

1. 모든 상품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협정” 이라 합니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나.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과 적용 가능한 경우 협정 제2장 제2.6조(관세 차별)를 준수해야 합니다.
2. “Unique reference number” 란에는 이 신고서의 작성자에 의해 부여된 임의의 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발급 번호, 상업송장의 일련 번호 등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이름, 주소, 국가 및 작성 가능한 범위에서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4. 제2란에는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5. 제3란에는 생산자의 이름, 주소, 국가, 전화번호 및 작성 가능한 범위에서 전자메일(E-Mail) 주소를 적습니다. 생산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NOT AVAILABLE” 이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6. 제4란에는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주소, 국가 및 작성 가능한 범위에서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7. 제5란에는 각 상품의 연번을 적습니다.
8. 제6란에는 포장의 수량 및 종류,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해당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습니다.
9. 제7란에는 각 상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10. 제8란에는 각 상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문구
(가) 협정 제3장 제3.2(가)조를 충족하는 완전획득 또는 생산된 상품	WO
(나) 협정 제3장 제3.2(나)조를 충족하는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된 상품	PE
(다) 협정 부속서 3-가에 규정된 품목별 요건을 충족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 - 세번변경 - 역내가치포함비율 - 화학반응	CTC RVC CR
(라) 협정 제3장 제3.4조를 충족하는 상품	ACU
(마) 협정 제3장 제3.7조를 충족하는 상품	DMI

- 1)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다)를 사용한 경우 상기 표의 기재 문구를 대신하여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실제로 사용된 원산지 결정기준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예시: CTH, RVC 48% 등)
- 2)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나) 또는 (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 및 (마)에 해당하는 기재문구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예시: CTC, DMI)

11. 제9란에는 각 상품에 대한 RCEP 원산지 국가를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다만, 원산지 국가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 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가 제공한 정보에 기초하여, 최고 세율 국가명 다음에 별표(*)를 표시합니다. 협정 제2.6조제6항가호가 적용된 경우 “*” 를, 제2.6조제6항나호가 적용된 경우에는 “**” 를 기재합니다.

(예) Australia* 또는 Indonesia**

상황	제9란 RCEP 원산지 국가에 기입
(가) 상품이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된 품목이나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의 추가요건(DV 20%)을 충족하지 않음 (나)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이 협정 제3장 제3.2(나)조에 의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었으나, 협정 제2장 제2.6조제5항에 규정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수출 당사국에서 발생하지 않음	협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서 생산한 물품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 중 최고가치를 기여한 당사국명 기재
아래를 포함한 기타 모든 경우, (다) 상품이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된 품목이며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의 추가요건(DV 20%)을 충족함 (라) 상품이 협정 제3.2(가)조에 따라 완전획득 또는 생산됨 (마)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이 협정 제3장 제3.2(다)조에 의한 부속서3-가(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함 (바) 수입국의 부속서1 부록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이 협정 제3.2(나)조에 의한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되었고, 협정 제2장 제2.6조 제5항에 규정된 최소공정 외의 공정이 수출 당사국에서 발생함	수출 당사국명 기재

12. 제10란에는 총중량 등 상품의 수량과 함께 제8란의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 적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본선인도가격(FOB)을 적습니다.

13. 제11란에는 송장 번호와 날짜를 적습니다. 다수의 송장이 사용된 경우, 각 물품 별로 송장번호와 날짜를 기재합니다.

14. 제12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적습니다. 다만, 제14란에 "√" 표시 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상세 정보를 이 난에 기재합니다.

15. 제13란에는 이 서식의 작성자가 수입 국가명, 작성 일자, 작성자의 이름을 적은 후 서명합니다.

16. 제14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 표시를 합니다.

가. 협정 제3.19조에 따른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Back-to-back Declaration of Origin"란에 "√" 표시 합니다. 이 경우 원본 원산지증명의 참조번호, 발급일, 발급 국가, 최초 수출 당사국의 RCEP 원산지 국가, 최초 수출 당사국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해당되는 경우로 한정)를 제12란에 적습니다.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송장이 발급된 경우 “Third-party invoicing”란에 "√"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과 국가명을 제12란에 적습니다.

